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0.04.16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안 제16조제4호 중 “시 단위”를 “시·도 단위”로 명확히 규정하여
조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“특기장학생은 시·도 단위 이상의 영어, 수학,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
경시대회나 문화, 예술, 체육 분야의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중학생·고등
학생으로 한다.” 로 함. (안 제16조제4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특기장학생은 시·도 단위 이상의 영어, 수학,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
경시대회나 문화, 예술, 체육 분야의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중학생·고등
학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16조(장학생의 자격)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특기장학생은 영어, 수학,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와 문화, 예술, 체육 분야의 시 단위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중 · 고등학생으로 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16조(장학생의 자격) (원안과 같음)</p> <p>1. ~ 3. (원안과 같음)</p> <p>4. <u>특기장학생은 시·도 단위 이상의 영어, 수학,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나 문화, 예술, 체육 분야의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중학생·고등학생으로 한다.</u></p>